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심 사 보 고

2003. 3.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3년 3월 3일

○ 회부일자 : 2003년 3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2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3. 3. 17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권 기 수)

가. 제안이유

○ 제5회 「대전·충청권 발전협의회」 총회(2003.1.17)에서 “대전·충청권” 명칭을 “충청권”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명칭을 “충청권 행정협의회”로 변경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난 1월 제5회 대전·충청권 발전협의회 총회의 결과에 따라 “대전·충청권” 명칭을 “충청권”으로 변경하고, 협의회 내용 중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규약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을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으로 개정하면서 개정안에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없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동규약 제명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을
⇒ “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 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 3. .

제안자 : 송은섭 의원

1. 수정이유

-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을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으로 개정하면서 개정안에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이 없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동규약 제명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을
⇒ “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으로 수정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대한수정안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중 “대전·충청권”을 “충청권”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p> <p>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u>충청권 광역 지방자치단체</u>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 안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u>충청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u>를 설치 운영한다.</p> <p>제3조 (구성) 협의회는 <u>대전광역시, 충청북도</u>와 <u>충청남도(이하 "충청권광역자치단체"라 한다)</u>로 구성한다.</p> <p>제9조 (사무처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 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광역행정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p> <p>제12조 (미 합의 사항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4조 (실무협의회) ②실무협의회는 <u>충청권 광역자치단체</u> 기획관리실장과 협의회안건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p>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p> <p>제1조 (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 (구성)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 (사무처리) (개정안과 같음)</p> <p>제12조 (미 합의 사항 조정요청) (개정안과 같음)</p> <p>제14조 (실무협의회) (개정안과 같음)</p>

대전·충청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의안 번호	78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제 5회 「대전·충청권 발전협의회」 총회(2003. 1. 17)에서 “대전·충청권” 명칭을 “충청권”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명칭을 “충청권 행정협의회”로 변경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 및 동법 제148조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신 · 구조문 대비표

□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현 행	개 정 안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충청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 안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충청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 안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권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대전·충청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충청남도(이하 "구성단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3조 (구성) 협의회는 충청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충청남도(이하 "구성단체"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9조 (사무처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 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광역행정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9조 (사무처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 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광역행정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 (미 합의 사항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u>내무부장관</u> 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미 합의 사항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u>행정자치부장관</u> 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부칙(2003. .)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외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